

日帝의 大韓帝國支配過程에 대한 小考  
- 乙巳年 ‘韓日協約’ 締結時까지

李 鍾 吉\*

차 례

I. 序 言

II. 日帝의 朝鮮開國과 利益의 漸奪

1. 日帝의 朝鮮 初期侵略策
2. 居留民保護와 利益의 漸奪
3. 漁業에 있어 利益의 漸奪
4. 朝鮮支配를 위한 內政關與

III. 日本의 國內事情과 植民地 確保政策

IV. 露日戰爭과 日本帝國主義의 韓國支配

1. 韓國支配를 위한 露日戰爭의 開戰
2. ‘韓日議定書’의 締結
3. 乙巳年 ‘韓日協約’의 締結

V. 맺음말

\* 東亞大 法大 教授, 法學博士

## I. 序言

일본제국주의의 韓國<sup>1)</sup>지배는 일본이 明治維新으로 축적한 국가적 힘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服屬해 가려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태평양을 건너온 美國의 거대한 힘에 맞설 수 없음을 看破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開國을 동의하게 되었으며, 미국이 優位가 되는 내용상의 불평등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히려 현실적 이익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 美日 두 나라는 앞서 1854년 3월 3일(日本曆)에 神奈川에서 美日和親조약을 맺게 된다. 그런 다음 安政5年(1858) 6월 19일(日本曆)에 兩國은 다시 美日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한다. 물론 이 무렵 영국과 프랑스는 淸나라를 점령하여 淸과의 사이에서 天津條約을 1858년 6월 26일과 27일에 각각 체결하게 된다. 아시아의 중심국으로 힘을 떨쳐오던 淸나라가 서구의 연합세력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게 되는 상황과 이들 연합국이 다시 일본으로 방향을 옮겨오게 되는 당시의 정황은 일본이나 미국 모두에게 조약체결을 催促 하게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여기에 러시아함대의 來日 정보 또한 일본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다.<sup>2)</sup>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韓國’이라는 명칭은 朝鮮을 거쳐 大韓國期에 이르는 시간까지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다. 建陽2年(1897) 8월 14일 즉, 朝鮮開國506年 紀元節을 기하여 高宗은 年號를 光武로 고치고, 同年 10월 12일에 國號를 ‘大韓’으로 정하면서 皇帝에 오른 다음 ‘大韓帝國’을 천하에 알리게 된다. 이러한 大韓帝國은 光武3年(1899) 3월 17일에 기본법인 ‘大韓國國制’(全文9條)를 반포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이 1876년의 開國으로부터 1905년의 韓日協約까지를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사용명칭을 朝鮮과 大韓帝國의 혼용을 피하기 위하여 韓國이라는 통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本 論文의 題目에서 사용하는 ‘大韓帝國’이란 칭호는, 논의의 주된 시기와 국가의 최고통치자가 皇帝로 登極한 당시인 것에 대한 고려와 함께 同 時期를 연구한 여타 연구들이 ‘大韓帝國’으로 칭해온 연구 관행을 따라서 ‘大韓帝國’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단, 史料上에서 명백하게 ‘朝鮮’ ‘韓國’ ‘大韓帝國’등의 표현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시기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시점에 대한 논의에서는 당해 사용 용어와 그 시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참고로 [大韓國國制]의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1條 ‘大韓國은 世界萬邦에 公認되온바 自主獨立호은 帝國이니라.’ 第2條 ‘大韓帝國의 政治는 由前則五百年傳來호시고 由後則恆萬世不變호오실 專制政治이니라.’ 田鳳德, 『韓國近代法思想史』, 박영사, 1980. 99~118면의 ‘二. 大韓國 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 부분 참조요.

2) 歷史學研究會編, 『日本史史料』(近代篇), 岩波書店, 1997. ‘日米和親條約’과 ‘日米修好通商條約’ 참조.

일본은 미국과의 修好通商條約을 통해, 미국 외교대표의 江戶 駐劄과 개항장에 領事의 駐在(제1조), 領事裁判權과 治外法權의 認定(제6조),<sup>3)</sup> 그리고 일정장소의 開港·開市 및 居留地의 설정과 自由貿易을 원칙으로 협정세율을 부과(제3조, 제4조)하는 등의 不平等條約을 맺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태평양 진출은 1846년의 오레곤주 편입과 1848년의 대 멕시코전의 승리를 통해 캘리포니아를 합병함에 따라 태평양 연안국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 극동으로의 진출을 중요 정책으로 설정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문이 되는 일본과의 만남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sup>4)</sup> 결국 무력을 앞세운 미국의 힘에 굴복하면서 일본은 기존의 쇄국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곧 바로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조약체결로 문을 연 일본은 적극적으로 西歐諸國의 문물을 섭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렇게 축적한 힘은 결국 후일 상대적으로 近代化의 진보정도가 느린 주변의 아시아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방법과 도구로 활용하기에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sup>5)</sup>

일제의 조선개국과 이후의 지배모습은 일본이 서구열강에 문을 열고 수호조약을 체결한 과정과 방법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보다 견고하게 수행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함에 무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5년의 韓日協約(乙巳條約)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행해온 한국침략의 과정을 日本史史料와 外交條約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東洋平和와 朝鮮의 獨立을 구호처럼 내세우면서 한국을 식민지로 구축해간 일제의 당시 식민전략을 새롭게 이해해 보고자 한다.

3) 美日修好通商條約 第6條에서 ‘일본인에 대하여 犯法을 행한 미국인은 美國領事(Consul) 裁判所에서 심리하여 미국법에 따라 처벌하며, 미국인에 대하여 범법을 행한 일본인은 일본관리가 審理한 다음 일본법에 의해 처벌하며, 日本奉行所 美國領事裁判所는 雙方 商人이 행한 債務不履行의 경우를 처리하는 등’의 領事裁判權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西洋人の 對아시아法觀과 領事裁判의 문제에 대하여는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박영사, 1982. 210~11면 참조요.

4) Tyler Dennett, *American in Eastern Asia*, The McMillan Company(New York), 1922, p. 249이하 참조.

5) 洪淳鎬, 『韓日外交의 國際關係史的 省察』, 『광복50주년기념논문집 I』, 1995, 233~6면.

## II. 日帝의 朝鮮開國과 利益의 漸奪

### 1. 日帝의 朝鮮 初期侵略策

일본은 조선과 丙子年(1876)2월2일에 체결한 韓日修好條規를 통해 이미 朝鮮國은 自主國家이며 일본과 平等權을 보유하는 것을 同條規 第一款에 규정함으로써, 근대적으로 독립된 국가로서의 조선을 대내외에 인정하면서 淸과의 관계를 단절시켜갈 준비를 철저히 해 왔던 것이다.<sup>6)</sup> 당시 조선과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난색을 표하는 조약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애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설득하면서 조선에 대한 지배계획을 수행해 갔던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신들이 구미열강으로부터 강요당한 것과 꼭 같은 내용의 불평등조항인 片務의 領事裁判權등을 요구하여 이를 규정하게 된다.<sup>7)</sup>

그리고 본격적인 일제의 한국침략은 한국사회가 露呈하는 1890년대 중반의 국내적 동요를 최대한 이용함에 기인하고 있다. 韓末의 정치·사회적 변화는

6) 大朝鮮國開國四百八十五年丙子二月初二日(大日本國紀元二千五百三十六年 明治九年二月二十六日)에 朝鮮과 日本사이에 체결된 『韓日修好條規』는 전체 十二款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締約 일자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각 국이 사용하던 朝鮮曆과 日本曆의 차이에 의한 결과이다). 그 중 第一款은 “朝鮮國自主之邦 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 嗣後兩國欲表和親之實 須以彼此同等之禮相待 不可毫有侵越猜嫌 宜先將從前爲交情阻塞之患諸例規 一切革除 務開擴寬裕弘通之法 以期永遠相安”이라고 하여 양국사이에 自主와 平等, 互惠의 基調위에서 영원토록 상호간에 安寧을 기하도록 힘쓸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타의 조항에서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2관에서 調印 15개월후 수시로 상대국의 京城과 東京에 公使館의 설치를 가능케 하였으며, 제4관과 제5관에서 조선의 2개항 開港과 日人의 왕래통상허용 및 동 장소에서 日人의 土地賃借·家屋營造·家屋賃借등의 권리인정, 제7관에서 朝鮮沿海 측량과 海圖作成 가능, 제8관에서 조선정부의 開港口에 일본정부의 管理官 파견을 규정, 제10관에서 조선의 開港口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日本官員에 의해 재판을 받는 治外法權의 설정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양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규정의 실천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불평등의 정도는 더욱 심한 지경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관에서 밝히고 있는 ‘朝鮮에 대한 自主國 認定과 平等·和親·相安등’의 표현 또한 역사상 지속되어온 朝鮮과 淸관계의 차단을 기본으로, 새로이 접근해오는 여타 제국의 조선접근을 배제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된 일본의 정치적 책략임을 그 후의 한일 관계의 진행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게 된다. 주요자료로 『韓國條約類纂』; 洪淳鎬, 韓日外交의 國際關係史의 考察, 『광복50주년기념논문집 I』, 1995; 金景昌, 『東洋外交史』, 김문당, 1989; 金景昌, 朝鮮開國의 政治史의過程, 『동북아』(창간호), 1995등 참조.

7) 歷史學研究會編, 『日本史史料』(近代篇), 岩波書店, 1997. 116面. 그러나 영사재판권과 관련하여 당시 조선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동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존의 조선사회가 가져온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變改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향한 기반의 구축을 급속히 이루어 내는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 조선사회가 안고있는 사회모순과 부패의 만연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사회개혁 요구는 급진적이며 전면적으로 전개된다. 東學農民戰爭과 甲午改革은 진행과정에 있어 倭勢의 강력한 개입이 있게 되는데, 이는 당시의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의 내적 허약을 익히 알고있는 상황에서 조선침략을 위한 책략을 순서에 따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sup>8)</sup> 당시 일본의 조선에 대한 관계의 설정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일제가 설정한 장기적 목표를 향해 淸의 세력을 배격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선에 있어서의 이익을 잠식해 가는 책략에 기초하여 전개시켜 갔던 것이다.<sup>9)</sup>

## 2. 居留民保護와 利益의 漸奪

양국은 韓日修好條規의 第11款에 근거하여 丙子年7月6日(이하 朝鮮曆에 의함)에 韓日修好條規附錄規程을 마련하게 된다. 전체 11款으로 구성된 동 규정은 일본인의 조선에서의 활동에 조선이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채워 놓고 있다. 특히 조선국내의 지정된 開港場에 한정은 되지만 日本産物의 매매·증여 및 교환과 日本貨幣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조선인 ‘所有物’을 일본화폐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sup>10)</sup> 또한 第3款에서는 “朝鮮國通商各港에 있어 일본인들은 住居用 땅을 조선인 地主와 상의하여 ‘租賃’(賃借料)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朝鮮國政府에 속하는 땅에 대하여는 조선국 인민이 官

8) 趙東杰, 『日帝下韓國農民運動史』, 한길사, 1979, 19~27면; 趙璣濬,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大旺社, 1977, 97면 이하; 愼鏞廈, 『東學과甲午農民戰爭研究』, 일조각, 1993, 322~327면; 申基碩, 『新稿東洋外交史』, 探求堂, 1976, 122면 이하 참조.

9)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는 30여년간을 일본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Durham White Stevens의 행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된다. 스티븐스는 1873년6월에 주일미국영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된 이래로 일본에 외교적 조언을 끊임없이 행하였다. 미개와 부패로 가득한 조선에서 淸을 축출해야 하는 것은 조선과 관련된 모든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은 한국지배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일본만이 한국의 장래에 正義와 近代化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위장된 의견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었다. 조선에 있어 스티븐스의 淸國 배격과 일본옹호논의는 일본제국주의의 면밀한 密命과 企圖 속에서 이루어 졌던 것이다. 그러한 스티븐스가 1904년12월27일에, 실질적으로는 일본제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外務顧問으로 傭聘 되었음으로 인해 일제에 의한 한국의 保護國化는 더욱 힘있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崔鍾庫, 상계서, 219~247면 참조요.

10) ‘韓日修好條規附錄’ 第4款, 第7款, 第8款등 참조.

에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租額을 납부함으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에 있어 일본인의 토지사용이 合法化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과 함께, 일본이 당시 조선의 토지소유관계를 個人所有와 官(國家)所有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런가 하면 1883년(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二年)8월30日에는 仁川港에 日本商民의 居留地借入과 관련하여 일정의 租價를 납부하면 地契를 발급하여 주게 되는데, 일본상인과 그 승계인 및 상속인에게 永遠히 租與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sup>11)</sup> 아울러 이 地契는 소정의 지세납부등의 조건만 이행하면 地契에 관련된 권리를 永世所有케 하고 있다.<sup>12)</sup> 외국인 居留地를 중심으로 조약이 체결된 소속국의 관리나 국민은 그 거류지내에서 토지를 買收하거나 所有할 수 있는 권리를 점차 확보해 가게 된다. 그와 함께 監理使등의 韓國人 官吏와 同 地方駐在 領事, 그밖에 登錄地主들이 選舉로 뽑은 3인이하의 議員으로 구성되는 居留地會를 조직하여 거류지회사무소에서 필요공비를 수납하며, 登冊 存案(保存登記)도 管掌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sup>13)</sup>

그리고 일본은 光武六年(1902)五月十七日에 조선정부와 調印한 馬山浦專管 日本居留地協定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에 우월하는 거류지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동 협정서의 第二條에서 ‘居留地內 所在道路溝渠本屬官有 而此約施行之後 諸般施設維持之權 一任日本領事官事’라고 하여 본래 官有에 속하던 도로·구거등 제반설비에 대한 시설유지권을 日本領事官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第三條는 ‘本協定書調印之時 居留地內所在外國人(日本人並)已買地段 與未及買收之韓國人所有之段 由日本政府買收之先韓國政府所定之稅 一遵從來所定地方章程事/ 但韓國人所有之段 本協定書調印日起 限一個年以來 由日本政府買收 在買收以前 該地段 勿得向別國人放賣或租賃事’라고 하여 일본이 한국내 居留地 土地에 대해 土地買得을 절대적이며 배타적으로 행할 것을 설정하게 된다. 더욱이 第四條에서는 ‘居留地所在 韓國政府官有地價 每百方米突以日貨參元爲定 至韓國人所有地段及家舍買收之時 該業主如或擡價 日本領事以爲不合 則韓國監理會同日本領事 使評價人公平論價事’로 규정하여 거류지소재 한국정부

11) 仁川口租界條約(일본은 仁川港日本居留地借入約書로 칭함)으로 호칭되는 동 조약에서 朝鮮은 ‘地契’를, 日本은 ‘地券’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과의 조약체결이 있는 다음해 3월 7일에는 淸國과도 仁川口華商地契章程을 맺게 된다.

12) 1884년9월에 調印한 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 등 참조.

13) 光武元年(1897)10월16일에 調印된 鎭南浦及木浦居留地規則 참조. 이후 光武三年(1899) 5월2일에는 유사내용으로 群山浦馬山浦城津租界章程을 調印하고 있다.

官有地에 대해서는 100평방미터당 日貨 3元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국인 소유의 토지와 家屋의 매수에 있어서는 日本領事가 사실상 가격의 적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 3. 漁業에 있어 利益의 漸奪

또한 漁業에 있어서는 1889년10월20일에 韓日兩國通漁章程을 調印하여 兩國 海濱을 往來하면서 捕魚하는 경우, 漁業稅와 漁獲관련 규정을 정하고 어업 활동을 위한 准單(免許鑑札)을 발급 받아 어로행위시 이를 항상 휴대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sup>15)</sup> 同 章程 第1條에서는 ‘凡於兩國議定 地方海濱三里(依日本國海里算法.以下準之)以內欲營漁業之 兩國漁船須詳記其船廣幅之尺數 所有主之貫籍姓名 及搭坐人員 由其船主或代理人 繕具稟單 日本漁船呈經其領事官 交通商口岸地方官署 朝鮮漁船呈交議定地方郡區役所 竣經查驗其船請領准單 但 漁業時 必須攜帶准單’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양국어선은 3海里이내의 연안에서 조업을 할 경우 배의 크기와 所有主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일본어선의 경우는 領事를 경유하여 開港場 地方廳에, 조선어선의 경우는 地方郡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准單(免許鑑札)을 받게 하고 있으며, 이 准單은 漁撈 活動時에 항상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第11條에서는 본 장정에 위배하여 처분등이 필요할 경우, 일본 海濱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日本地方裁判所가 관장하며, 조선국 海濱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관이 日本領事에게 알려서 일본영사가 裁斷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을 기초로 지속적으로 어장확대와 함께 한국진출을 도모해 오던 일본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연안에서의 일본인 어업을 가능케 하더니, 光武四年(1900)十月三日에는 일본인민에게 경기도연안에 있어 魚採를 허용토록 하였으며, 光武八年六月四日에는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연안을 일본인

14) 일본은 한국정부소유의 官有土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유토지에 대해 관리 및 소유관계를 먼저 확보한 다음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매수로 들어가면서 그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 隆熙2年3月 勅令第17號로 淸津官有地賣下規則을 반포 시행하게 되는데, 청진을 관할하는 理事官의 管掌下에 官有地를 競賣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다.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統監府가 설치되면서 理事廳이 행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理事官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15) 韓日兩國通漁章程은 1883년6월22일 양국전권대신간에 협의된 朝鮮國貿易規則 第41款에 의거하여 兩國海濱에 왕래하여 어획함에 따른 漁業稅와 여타의 업무규칙을 정하게 된 것이다.

에게 개방하여 魚採가 가능하도록 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신들이 조선에 대해 행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利用厚生의 大義에 부합하는 것이며 조선정부의 國庫收入 증대를 가져오게 하는 것과 함께 朝鮮漁民들에게 일본어민들이 활용하는 採魚방법을 이전하는 것이 되어 조선정부에 직접간접으로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6)</sup> 또한 이에 앞서 조선과 일본은 1883년6월22일에 ‘處辦日本人民在約定韓國海岸魚採犯罪條規’를 調印하게 되는데, 조선의 約定海岸에서 일본인이 조선의 國法을 犯한 행위에 대해 朝鮮官吏는 당해 일본인을 가까운 개항장의 일본 領事에게 속히 이송하여 일본영사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護送중에 조선관리에 의한 遲滯나 苛酷行爲가 없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조선과 맺은 丙子修好條規에서부터 일관된 모습으로 조선을 일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나라로 삼아 정책을 펼쳐 왔으며, 조선에 있어 일본인의 행위는 領事官을 중심으로 언제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규정하여 왔던 것이다.

#### 4. 朝鮮支配를 위한 內政關與

일본은 1894년6월15일 淸에 대해 日淸共同으로 朝鮮의 內政에 대한 改革案을 제안한다. 당시는 東學農民戰爭이 일어나 조선정부의 출병요청에 의해 淸軍이 진주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도 6월2일에 출병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출병 얼마 후 농민전쟁은 진정되었으며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의 內政을 개혁할 기회로 삼고서 그 의사를 청국에 전달하게 된다. 청국은 단호히 이를 거절하였고, 일본은 23일에 단독으로 내정개혁을 임하는 것으로 하면서 청국에 관계단절을 통지하게 된다. 따라서 청일간의 충돌은 필연적 상황으로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결국 일본은 淸國에 대한 宣戰의 詔勅을 1894년8월1일에 포고하게 되었고 그래서 발발된 청일간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내정의 관여를 계획대로 추진해 갈 수 있게 된다.

당시 일본이 제안한 ‘朝鮮に關する日淸共同內政改革提案’의 명분은 日淸韓간에 갈등을 방지하며 東洋大局의 平和를 維持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

16) 明治37年(1904)3月22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가 大韓帝國 外部大臣 趙秉式에게 보낸 ‘忠淸, 黃海, 平安道ニ於ケル漁業ニ關スル往復’文書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또 당시 러일전쟁과 관련하여 일본군대의 北進에 軍隊副食物이 크게 필요하게 되므로 상기 沿岸에 일본 漁民들이 많이 出漁하여 그 산물을 활용함으로써 도움이 되어야 함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



라는 명제를 내어 걸고 있다.<sup>17)</sup> 그러면서 조선에 있어 民亂을 속히 진압하고 그런 다음 朝鮮國內政을 改良하기 위하여 日淸兩國이 상설위원 약간명을 조선에 상주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케 한다는 것이다.

一. 財政을 조사할 일

一. 中央政府와 地方官吏를 줄이는 일

一. 필요한 警備兵을 설치하고 國內의 安定을 保持할 일

一. 歲入에서 歲出을 줄여서 剩餘金을 利子로 하며, 國債를 모집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나누어 사용함

그러나 만약 청국정부에 일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帝國政府는 단독으로 조선정부에 대하여 전술한 정치개혁을 위해 힘쓰게 될 것임을 명백히 정하고 있다. 일본은 결국 朝鮮政府에 대한 淸國과의 宗屬關係의 破棄를 7월22일에 요구하게 되었고, 그 이튿날에는 일본군에 의해 조선의 王宮이 점령당하게 된다.

그런 다음 일본은 8월1일에 청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獨立國家로 있는 朝鮮에 대해 淸國이 행하는 內政干涉은 부당한 것이며, 일본은 조선의 독립확보를 위하여 전쟁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청나라를 중심으로 한 華夷秩序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며 淸日戰爭 開戰의 의미를 스스로 정리하고 있다.<sup>18)</sup>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 댓가를 충분히 보장받게 되었지만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국면이 새롭게 전개된다. 즉, 1895년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결속하여 일본의 대외 정책에 제동을 걸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일본의 조선과 청에 대한 영향력의 축소를 요구한 三國干涉이 발생하였고 일본이 결국 이를 수용함으로써 일시 일본의 세력이 주춤해 지게 되었다. 이때의 결과로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의 댓가로 얻은 遼東半島를 반환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이처럼 확대되면서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직접적인 간섭이 자유스럽지 않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의 만회를 위해 三浦梧樓 公使가 중심이 되어 10월8일에 明成皇后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렇지만 1896년2월에는 고종황제가 오히려 러시아공사관으로 播遷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간섭은 일시적이거나 여의치 않게 되었던 것이다.

17) 歷史學研究會編, 『日本史史料』(近代篇), 岩波書店, 1997, 219~20면.

18) 전개서, 『日本史史料』(近代篇), 1997, 220~21면 참조. 福澤諭吉은 淸日전쟁을 '日淸の戰爭は文野の戰爭なり'라는 글에서 일본의 文明이 청나라 野蠻에게 가하는 <義戰>이라고 칭하고 있다.

### III. 日本의 國內事情과 植民地 確保政策

이 시기를 전후하여 경제적 측면에 있어 일본의 중요한 변화는 1897년 松方正義에 의해 金本位制의 도입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국내물가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무엇보다도 原資材등의 수출입 증가와 일본의 國勢成長등에 힘입어 선진외국과의 교역이 필요로 되는 만큼 그들 나라들과의 金融市場에 있어 융통은 대단한 편익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英國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國際金融秩序에서 금본위제로의 이행은 일류국가에 바로 편입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과 함께 貿易의 活性化에 크게 기여하는 利點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19)</sup>

이러한 상황에 있어 청일전쟁은 일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으로, 국가적으로는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른 예산의 增編요구와 함께 산업이 활발하게 발흥하는 계기가 되고있었다. 戰後의 국가경영은 많은 예산의 소요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는 地租의 增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한편 일본의 산업이 발흥하고 공장제기계공업이 도입되기는 1880년대 후반부터이며, 청일전쟁은 이들 산업을 급속히 성장시키는 촉매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일전쟁이후는 紡績 鐵道 鑛山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촉진되게 되었다. 그런 얼마 후 러일전쟁을 치른 후에는 電力 金融 造船 製鐵業이, 1910년대의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는 化學工業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게 된다.<sup>20)</sup>

1890년대와 1900년대 초 일제가 우리에게 행한 침략적 행위는 바로 일본국내의 이러한 힘의 축적과 사회적 변화를 주변국에 대한 식민정책을 통해 최대한 확산시켜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낸 결과였다. 당시 일본의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빈곤한 생활상과 歐美의 선진 강대국자본의 국내유입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 및 노동문제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은 인근 아시아 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경영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게 되었던 것이다.<sup>21)</sup>

이러한 상황에서 日帝는 국내문제의 團束을 위해서 1900년3월10일에 ‘治安警察法’을 만들어 結社의 組織이나 集會에 管轄警察官署가 강력하게 개입함으

19) 전게서, 『日本史史料』(近代篇), 1997, 229~30면. ‘松方正義の金本位制採用理由’ 참조.

20) 전게서, 『日本史史料』(近代篇), 1997, ‘地租増徴の必要’와 ‘工場労働者數の動向’등 참조.

21) 전게서, 『日本史史料』(近代篇), 1997, ‘暗黒街の東京’과 ‘内地雜居後の日本’등 참조.

로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同法 第4條에서 ‘軍人 警察은 물론이고 神官神職僧侶와 諸宗教教師, 그리고 官立·公立·私立學校의 教師와 學生, 女子와 未成年者, 公權이 剝奪 또는 停止中에 있는 者’에 대하여는 政治的 結社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第8條에서는 ‘安寧秩序를 保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관은 屋外集會, 多衆의 運動 또는 群集을 制限·禁止·解散하거나 屋內集會를 解散할 수 있다. 結社에 대해서도 前項(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內務大臣은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違法處分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는 行政裁判所에 出訴할 수 있다.’고 하여 강력한 경찰권의 행사를 통해 국가가 의도하는 정책수행을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봉쇄를 원천적으로 가능케 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勞務의 條件이나 報酬에 관하여 상대방의 承諾을 強要하는 경우, 耕作目的 土地에 대한 賃貸借의 條件에 관하여 승낙을 강요하면서 상대방에게 暴行, 脅迫하거나 혹은 公然히 誹謗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17조)고 한 규정은 당시의 노동계와 농촌사회에 법이 개입하여 이들의 권리행사를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되고 있는 중요한 조항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본 조항의 후반부, 경작농지와 관련하여서는 일본농촌의 당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 地主와 小作人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 되는 것이다. 19세기 말 일본의 국내 농업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獨逸人 農商務省顧問이 쓴 ‘日本農民の疲弊及び其救治策’의 기술을 참고 해 본다.<sup>22)</sup>

‘일본농촌은 明治 初年以來 누차에 걸쳐 폭동이 일어났다. 명치6년부터 17년 사이에 18차례의 폭동이 일어났으며 그중 2~3회는 육군을 동원하여 진압하게 되었다. 일본농민의 피해가 지금의 속도로 진행된다면 中級農民은 15년 내지 20년후에는 전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며, 현재 존재하는 65만호의 중급농민은 아마도 無一物의 貧民으로 변화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식견은 당시 일본사회의 지배층에게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졌을 것이며 결국 일본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내부적인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식민지배

22) パウル マイエット는 독일인으로서 1875~77년까지는 일본황실의 외국인 교사로, 1882년6월까지 大藏省의 顧問(ブレイン)으로 있었으며, 1884~93년 일본을 떠날때까지 遞信省과 農商務省의 顧問으로 활약하였다. 외국인이지만 일본을 비교적 잘 알 수 있었던 그는 1891년에 ‘日本農民の疲弊及び其救治策’을 발표하였다. 自作農의 土地喪失을 염려하는 것과 함께 地租輕減에 따른 農事改良意志와 企業育成意志를 중시하였으며, 穀物貿易과 農業保險을 실시하는 것이 당면한 농민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게서, 『日本史史料』(近代篇), 170~1면 참조.

경영을 위한 침략행위를 적극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일본국내의 사정이 한편으로는 불안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서 琉球에 대해서도 점차 일본영토로 편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琉球 역시 청국과 宗屬관계를 맺어 오다가 1895년 청일전쟁이후에야 비로소 일본의 郡縣으로 편입이 이루어진다. 이때 일본은 琉球의 舊慣習에 대한 정책의 전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地方制度를 정비한 다음 土地의 所有權을 명백히 하고 地價를 査定하여 地租를 改正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와 함께 地方稅制의 실시를 통해 國庫지원을 줄이게 한다. 즉 1896년에 二區五郡制를 시행하고 1899년에는 土地整理法을 공포하며 1902년에는 人頭稅를 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들 중에서 琉球民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土地整理事業이었다. 핵심된 내용은 村民의 共有地를 地割制度에 따라 경작하고 村이 貢租納稅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후 共有地는 경작자의 個人所有로 되고 그 개인이 納稅義務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어 졌다. 그 과정에서 山林은 대부분 官有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民人들의 주요 生産基盤이 상실되어 갔던 것이다.<sup>23)</sup> 이는 일본이 인근 국가에 대한 접근과 內政關與 및 植民化를 위한 정책시행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 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토지소유관계를 새롭게 編制함으로써 官有地를 대규모로 창출해 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일본제국주의 확립의 기본 자산으로 활용해 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실례가 되는 것이다.

#### IV. 露日戰爭과 日本帝國主義의 韓國支配

##### 1. 韓國支配를 위한 露日戰爭의 開戰

대외관계에 있어 일제는 장기적으로 주변국가를 服屬시키려 하면서 이에 방해가 되는 대상국에 대해서는 제3국과의 同盟등을 통해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직접 전쟁을 통해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戰略을 실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러일전쟁이 되는 것으로, 이미 1890년대 후반부터 조선에 대해 행하려 했던 專斷의이며 專屬的인 내정의 관여와 간섭책략이 제약을 받는데 대한 만회의 전쟁을 구상하고 있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23) 전게서, 『日本史史料』(近代篇), 1997, '琉球『舊慣溫存』政策の轉換'자료 참조.

러시아와의 전쟁에 앞서 1902년1월30일에 英日同盟을 체결하게 된다.<sup>24)</sup> 당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한 北淸事變後 러시아의 청국과 한국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던 일본이 영국의 지지에 의존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일제는 한국에 대한 독립의 승인과 침략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英日間에 협의한 約定書 서문에 ‘日本政府와 英國政府는 오직 極東에 있어 現狀과 全局의 平和 維持를 희망하며 淸帝國과 韓帝國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할 것, 그리고 당해 양국에 있어 商工業上 균등한 기회를 갖는 것에 관련하여 이익관계의 조정을 위해 약정을 체결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러시아는 일본세력의 견제를 위해 한반도에 있어 한반도를 정치적으로 중립화하는 방안을 1901년1월에 내어놓게 된다. 이는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한 후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인 진출을 시도할 것을 염려한 러시아의 선제적 행동으로, 일본에 대해 러시아가 한국을 공격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일본 또한 한국에 있어 군사시설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을 일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일본의 대륙침략을 봉쇄할 수 있게 하는 것과 함께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만주에 대한 세력확보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듯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한국에 대해 각각 자신들이 가져야 하는 이익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당시 極東의 질서를 편제하려 하였던 것이다.<sup>25)</sup>

이처럼 치열하게 전개해온 양국의 식민지 확보를 위한 경쟁은 결국 전쟁의 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1904년2월8일 러시아에 대한 宣戰布告도 없이 러시아의 극동함대를 공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 일본은 대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즉 일본의 선전포고는 2월10일에 있게 되는 것으로, 이미 2월8일에 旅順港 밖에서 전투는 먼저 일어났던 것이다.

일본황제가 1904년2월10일에 내린 ‘露國に對する 宣戰の詔勅’에서 ‘極東의 平和와 韓國의 安危를 염려하며 한국의 안위의 위협은 일본제국의 국익을 침해당할 위험이 임박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일본은 러시아의 위협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sup>26)</sup>

24) 전계서, 『日本史史料』(近代篇), 1997, ‘日英同盟’ 참조.

25) 최문현, 『열강의 동아시아 정책』, 일조각, 1979, 68~9면. 한반도의 중립화 논의는 英日同盟이 체결된 이후에 또다시 러시아에 의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日本과 美國의 이익에 결코 부합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26) 전계서, 『日本史史料』(近代篇), 1997, ‘露國に對する 宣戰の詔勅’ 참조.

## 2. ‘韓日議定書’의 締結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의 발발직후인 2월23일에 韓日間の 攻守同盟으로 불리워 지는 韓日議定書を 調印하게 된다. 즉, 大韓帝國 皇帝陛下의 外部大臣 臨時署理 陸軍參將 李址鎔과 大日本帝國 皇帝陛下의 特命全權公使 林權助는 各 相當의 委任을 받아서 다음의 條款을 協定하게 된다.

- 第一條 韓日 兩 帝國 사이에 恒久不易의 親交를 保持하고 東洋平和의 확립을 위하여 大韓帝國政府는 大日本帝國政府를 확신하며 施政改善에 관한 증고를 容認할 것.
- 第二條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皇室을 확정한 親誼로 安全康年케 할 것.
- 第三條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의 獨立과 領土保全을 확실히 보증할 것.
- 第四條 第三國에 의한 침해나 內亂을 당하여 大韓帝國皇室의 安寧과 영토보전에 위 힘이 있을시는 大日本帝國政府는 신속히 臨機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가함. 그러나 大韓帝國政府는 大日本政府의 行동을 容易하게 하기위해 便宜를 십분 제공할 것. 大日本帝國政府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 軍事戰略上 필요한 地點은 隨時 로 收用할 수 있음.
- 第五條 大韓帝國政府와 大日本帝國政府는 상호간에 承認을 不經하고 後來에 本 協 定趣意에 違反할 協約을 第三國間에 訂立하지 못함.
- 第六條 本 協約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大日本帝國代表者와 大韓帝國外部大臣間 에 臨機 協定할 일.

議定書を 체결한 결과 일본은 한국의 보호와 안전을 명목으로 수시로 한국 내정에 관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일본정부의 承認이 없이는 한국은 독자적으로 제3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러일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이 한국과 체결한 이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내의 필요 지점에 대한 이용 및 軍事基地등의 설비가 가능하게 된 것과 함께 나아가서 한국 領土內에서 일본의 군사행동도 가능해 지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7)</sup>

일본의 일관된 한국지배정책은 최종적으로 러시아의 힘을 전쟁을 통해 배격해 내는 것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는 무력을 배경에 두면서 조약체결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성취시켜 갔던 것이다. 일본은 결국 우리정부로 하여금 이전에 러시아와 맺은 모든 조약에 대해 파기를 선언하게 하였으니, 韓國政府가

27)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一進會員들은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고 러일전쟁에 參戰하여 수 천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일제의 한국지배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되는 것이다(黃玿, 『梅泉野錄』, 隆熙元年 八月 참조).

光武八年五月十八日 ‘韓露條約廢棄勅宣誓及理由書’를 발표한 내용중 條約破棄를 선언하게 된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大韓政府는 日本이 俄國을 대하여 宣戰함이 한갓 大韓獨立을 維持하여 東洋全局에 平和를 確定하기에 在함을 商量함에 既往에 議定書를 成約하고 協力하여서 日本이 交戰하는 目的을 達하기 便케하고 今又在 俄公館을 撤退하였으니 是이로 韓俄間 外交關係가 實狀인즉 斷絶하였으나 그러나 또 來頭 我大韓의 方向을 明白케하고 俄國이 如前一例로 條約과 特准合同等節에 藉口하여 侵略의 行爲를 다시 못하도록 하기 爲하여 外部大臣이 勅宣書案을 政府會議에 提出하여 經議한後議政府參政과 聯名上奏하여 奉旨依奏 光武八年五月十八日’

이러한 조약파기이유에 기초하여 기존의 韓露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다. 핵심된 내용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獨立維持와 東洋全局의 平和保障이 러시아와의 관계단절 속에서 가능할 것으로 새겨놓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와 종래 체결하였던 조약등을 구실로 하여 러시아가 가해올지 모를 침략행위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음도 또한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기존관계는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 지게 되었다.

그리고 파기되는 조약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다음의 2개항에서 명백히 규정되고 있다.

- 一. 既往 韓俄兩國間에 締結한 條約과 協定은 一切 廢罷하고 全然勿施 할 事.
- 一. 俄國臣民이나 會社에 認准한바 特許合同中 至今尙在其期限內者는 自今以後로 大韓政府가 以爲無妨한 者면 如前히 其認准을 계속享有케하나 至於豆滿江鴨綠江鬱陵島森林伐植 特許하야는 本來 一個人民에게 許諾한 것인데 實狀은 俄國政府가 自作經營할뿐 外라 該特准規定을 遵行치 아니하고 恣意로 侵占의 行爲를 하였으니 該特准은 廢罷하고 全然勿施 할 事.

위의 내용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러시아인민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사항에 대하여서는 기한내의 것이면 계속 효력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森林伐採등과 관련하여서는 개인명의로 체결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정부가 경영해 왔거나 또는 특별허가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치 않고서 恣意的 行爲에 의해 권리를 侵奪한 경우에 있어서는 체결된 내용은 전혀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맺은 한일의정서에 기초하여 ‘對韓方針’ ‘對韓施設條項綱領’ ‘對韓施設細目’등을 마련하여 1904년5월에 閣議에서의 의결을 거친 다음 欽황의 재가를 받아 본격적인 한국지배에 나서게 되었다. 러시아와의 대전을 치루

면서 韓國併合의 현실적 필요는 더욱 더해 졌으며, 견제세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한국지배의 심화는 형식상의 협의절차만 거치면서 合法을 가장하는 奸惡함을 지속해 내었던 것이다. 특히 청일전쟁초기에 제1차 顧問政治를 시행한 이래로 1904년8월22일에 한일외국인고문에 대한 협정을 맺음으로써 제2차 고문정치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日帝의 手中에서 한국정치가 움직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러일간의 戰況은 1905년5월 전투에서 러시아 발틱함대가 일본군에 의해 패퇴함으로써 전쟁은 중국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한국지배 기도는 강도를 더하여 갔던 것이다.

일본은 이제 한국지배를 가장 효율적으로 행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용인을 위해 조약체결의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1905년7월에는 태프트-카스라사이에 密約으로 한국지배에 대한 미국의 묵인이 이루어 졌으며, 8월에는 영국과 제2차 英日同盟을 통해 영국의 동의를, 9월5일에는 마침내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지배에 대한 어떠한 장애도 없어지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日露講和條約을 체결하기 이전에 談判全權委員에게 보낸 訓令에서도 강화조약에 있어 絶對的必要條件의 첫 번째 사항으로 ‘韓國을 전적으로 우리의 自由處分에 委任하는 것을 露國에 약속받을 것’을 정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지배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집착 그 자체였다.<sup>28)</sup> 결국 일본과 러시아는 1905년9월5일에 日露講和條約을 맺게 되었으며 제2조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제2조 러시아제국정부는 日本國이 韓國에 있어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 側面에 있어 絶對優位의 이익을 승인하며 일본제국정부가 한국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指導 保護와 監督措置를 행함에 이를 沮害하거나 干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한국에 있어 러시아 臣民(subjects)은 다른 外國의 臣民(subjects) 또는 人民(citizens)과 同様の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이는 最惠國의 신민 또는 인민으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兩 締約國은 일체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한국간의 國境에서 러시아나 한국의 안전을 위협할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렇도록 한국을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한 일본의 장기적인 구상과 노력은 결국 한국의 意思나 國權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들 열강국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勝

28) 전게서, 『日本史史料』(近代篇), 1997, 1905년6월30일자 ‘日露講和談判全權に對する訓令案’ 참조.



戰者の 戰利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제국정부는 한국에 있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이익을 절대 우위적 지위에서 마음대로 획책하고 유린하면서도, 한국지배와 관련하여 東洋平和를 詐稱하며 自主와 獨立을 기회 있을 때마다 구호처럼 사용해 왔다. 自主의이며 獨立의이어야 하는 韓國을 帝國主義 日本이 指導・保護・監督하면서 東洋全局의 平和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인지.

결국 日帝는 丙子修好條約에서부터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한국지배를 러일전쟁의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열강에 의한 지배에 신음하던 아시아지역에 독립운동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한국을 병합함으로써 중국대륙에 대한 이권을 겨냥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다.<sup>29)</sup>

### 3. 乙巳年 ‘韓日協約’의 締結

이러한 경과를 거쳐 日帝는 1905년11월17일에 韓日協約을 강제적으로 체결함으로써 한국을 保護國으로 삼는 목표를 이룩해 내게 되었다. 일본이 그동안 진행시켜온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은 역시 한국을 일본의 지배하에 服屬시키는 것이었다. 많은 열강국 들을 세력다툼에서 이겨내면서 한국을 복속시킨 韓日協約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日本國政府와 韓國政府는 兩帝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主義를 鞏固케 함을 欲하여 韓國의 富強之實이 認定될 때까지 이 목적에 이르고자 다음 條款을 約定함.

第一條 日本國 政府는 東京外務省을 由하여 금후 韓國이 外國에 대하는 관계와 사무를 監理 指揮함이 가하고 日本國의 外交代表者와 領事는 外國에 在하는 韓國의 臣民과 利益을 保護함이 가함.

第二條 日本國政府는 韓國과 他國간에 現存하는 條約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任에 當하고 韓國정부는 金후에 日本國정부의 仲介에 由치 아니하고 國際的 性質을 有하는 何等條約이나 又約束을 아니함을 約함.

第三條 日本國政府는 其代表者로하여 韓國皇帝陛下의 闕下에 一名의 統監을 實하되 統監은 專히 外交에 관하는 사항을 管理함을 위하여 京城에 駐在하고 親히 韓國皇帝陛下에게 內謁하는 權利를 有함.

日本國政府는 又 韓國의 各開港場과 기타 日本國政府가 필요로 認定하는 地에 理事官을 實하는 權利를 有하되 理事官은 統監의 指揮하에 종래 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하던 一切職權을 執行하고 併하여 本協約의 條款을 완전히 실행함을 爲하여 필요로 하는 一切事務를 掌理함이 可함.

29) 전게서, 『日本史史料』(近代篇), 1997, ‘アジア諸國への影響’ 참조.

第四條 日本과 韓國間에 現存하는 條約及約束은 本協約條款에 抵觸하는 자를 除하는 外에 總히 其效力을 계속하는 자로 함.

第五條 日本國政府는 韓國皇室의 安寧과 尊嚴을 유지함을 보증함.

이미 1904년의 韓日議定書에 의해 한국의 지위는 日帝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1905년의 본 협약을 통해 한국은 형식적으로만 獨立國의 모습을 가지게 될 뿐이었다. 즉 일제가 한국의 대외관계를 모두 장악하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보호 마저도 일본의 外交官吏가 관장하게 됨으로써, 있을 수 없는 ‘독립국가’ 한국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皇帝 아래 統監을 두고 지방에는 理事官을 두게 되므로써 한국의 內政을 완전하게 日本官吏가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韓國을 富強國家로 만들며 韓國皇室에 대한 安寧과 尊嚴을 지켜내겠다는 협정의 내용은 한국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虛言이 되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미 러일전쟁을 통해 한국의 獨立과 領土保全을 선언하였지만 실제로는 日本閣議(1905년5월31일)에서 한국의 保護國化를 분명하게 결의하였으며, 10월27일의 閣議에서는 保護國 實行을 결정하고 있다. 결국 군사력을 배경으로 교섭을 행하여 11월17일에 韓日協約을 調印케 됨으로써 일본은 한국의 外交權을 박탈하게 되었고 統監府를 설치하여 外交事務를 관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統監府는 실제 警察 司法 財政 經濟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1905년의 韓日協約은 강제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미 당시에 無效論이 제기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sup>30)</sup>

당시 同 協約의 체결 상황에 대해 관련자료를 인용해 보도록 한다.<sup>31)</sup>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特派大使로 온 伊藤博文 侯爵은 제시된 조약에 의하여 皇室의 지위가 확고함을 황제에게 보장하면서 설득을 시도하였지만 쉽지 않았다. 11월17일 宮庭에서 열린 大臣會議에서 대신들은 일본전권대사가 자신들에게 행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십여시간의 토론끝에 조약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일본주둔군을 지휘하는 하세가와 장군의 수행을 받으며 伊藤 후작이 대신들의 同意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토론장에 나타나 다시 십여시간을 주면서 조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총리 대신 韓圭高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의장을 떠나 귀가할 것을 원하였다. 하지만 그는 떠날 수 없었으며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응한 후에야 대신들은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30) 전계서, 『日本史史料』(近代篇), 1997, ‘韓國保護權確立實行に關する閣議決定’ 및 ‘第二次日韓協約’자료 참조.

31) Le Temps du 13 janvier 1906 의 내용을 洪淳鎬, 韓日外交의 國際關係史的 省察, 『광복50주년기념논문집 I』,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275면의 주50)에서 재인용함.

이렇듯 동 조약은 당시로서는 文明國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도덕적으로 비열한 방법과 물리적인 강박으로 한국정부를 위협하면서 강요에 의하여 체결한 것이었다.

다섯명의 대신은 이 協約에 서명을 하였지만 高宗皇帝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sup>32)</sup> 고종황제의 조약체결 거부노력은 미국에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882년4월6일에 韓美兩國이 調印한 韓美修好通商條約 第一款의 ‘…… 若他國有何不公輕藐之事 一經照知 必須相助 從中善爲調處 以示友誼 關切’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sup>33)</sup> 그러나 美國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제공되지 않은 가운데서 한국은 日帝의 從屬國으로 고착되어 갔으며, 締約過程의 不當性에 기한 獨立國地位의 回復은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 V. 맺음말

日本帝國主義의 韓國支配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이 近代化를 이루어 내면서 축적한 힘을 바탕으로 植民地 획득을 위해 주변국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가는 과정에서 일으킨 侵略戰爭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와 체결하게된 불평등한 조약으로 개국을 한 다음 국가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改革政策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게된 일본국내의 社會再編과 産業革命의 여파는 해외의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획책하여 실천으로 연결시켜 가게 된다.

조선을 개국시킨 日帝는 부문별로 끊임없이 이익의 漸奪을 이루어 낸다. 국제적 지위의 우위를 최대한 이용하는 가운데 조약의 내용을 항상 불평등하게

32) 乙巳年 韓日協約의 無效 및 不法性에 대하여는 李泰鎮 編, 『일본의 대한제국강점』, 까치, 1994; 白忠鉉, 『國際法으로 본 1900년대 韓日條約들의 문제점』, 『韓國史市民講座』 19, 일조각, 1996을 참조바람.

33) 이에 대하여는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 I』, 1965, 179면 참조요. 당시 미국과 체결한 韓美修好通商條約에서도 제1조에서 韓美間의 영원한 平和와 友誼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측의 제1조 조약내용을 참고로 기록한다.

‘There shall be perpetual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King of Chosen and the citizens and subjects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If other Powers deal unjustly or oppressively with either Governments, the other will exert their good offices, on being informed of the case, to bring about an amicable arrangement, thus showing their friendly feelings.’

구성하였으며, 漸進的 支配戰略을 통해 본국인구의 韓國移住 장려와 이들의 권리 보장을 條約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시켜 나아갔다. 이러한 부분적 권리 보장의 뒷면에는 또한 帝國主義的 植民支配를 이루어낸 이후의 巨大利益의 獲得企圖가 잠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日帝는 한국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淸國·러시아등과의 관계에서 항상 自主性을 가진 獨立國 朝鮮(韓國)을 강조한다. 특히 1876년의 修好通商條約에서는 自主·平等·和親·相安등의 표현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領事裁判權 등을 중심으로 한 不平等的 內容을 조약의 중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韓國에 대한 植民支配를 보다 專斷的이며 專屬的으로 행해 내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일제는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항상 韓國의 獨立과 領土保全, 그리고 東洋全局의 平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日帝는 한국을 사실상 從屬國으로 결정짓는 1904년의 韓日議定書와 1905년의 韓日協約에서도 ‘韓日 兩國의 親交 保持와 東洋平和의 確立’과 ‘大韓帝國의 獨立과 領土保全’(이상 韓日議定書) 및 ‘韓國의 富強之實’(韓日協約)을 염원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을 欺罔하는 奸惡性을 지속해 내고 있다. 이와 함께 ‘韓國皇室의 安寧과 尊嚴을 維持’한다는 약속을 더하면서 마침내는 統監을 皇帝의 闕下에 두기에 이른다.

일제가 행한 한국 식민지배 과정은 경제적 부문에 대한 漸進的 利益侵奪과 所有秩序의 再編, 그리고 內政의 干涉이라는 일면과 함께, 한국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는 諸外國을 同盟과 戰爭으로 정리해 가는 과정을 밟고있다.

日帝가 작성한 日本史史料와 당시의 條約內容을 중심으로 살펴본 乙巳年 韓日協約까지의 한국지배과정은 極東에서 일본이 행한 일단의 제국주의적 당면 목표가 韓國支配였음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다. 이에는 물론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가치도 중요하게 존재시켜 두고 있었다. 결국 일제는 이후 한국을 統監府하의 半植民地상태에 둔 채로 법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면서 完全植民地로의 목표를 향해 빠른 속도로 移行해 가게되었던 것이다.<sup>34)</sup>

34) 이후 이어지는 統監府時期와 관련하여서는 權泰禧, 1904~1910년 일제의 침략구상과 施政改善, 『韓國史論』31(서울대), 1994; 鄭肯植, 『韓國近代法史攷』, 박영사, 2001, 제 5장 ‘統監府法制’부분; 姜昌錫, 『朝鮮統監府 研究』, 국학자료원, 1995. 등 참조요.